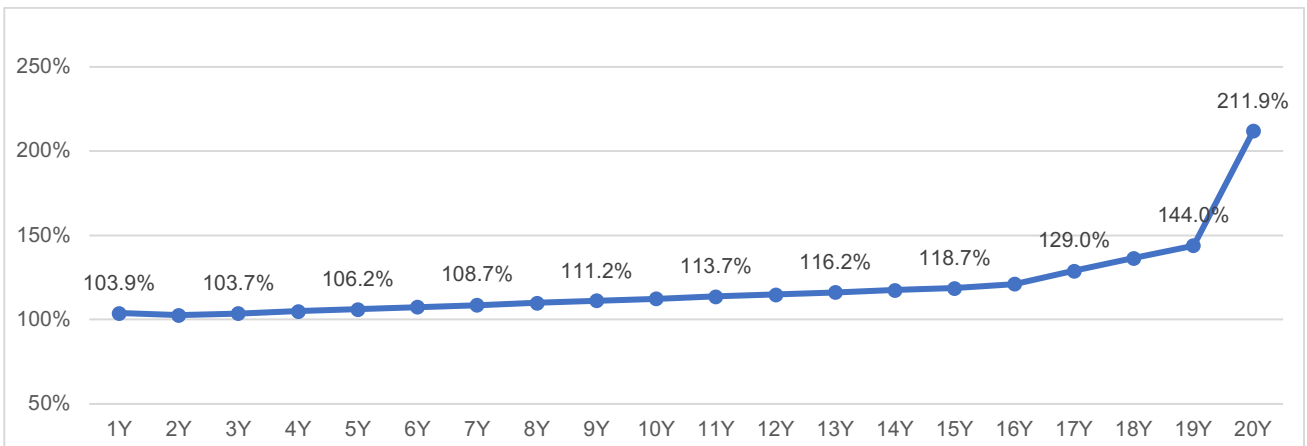


## 모햇 제1차 협동조합 탈퇴환급률

- \* 사업명: 모햇 제1차 협동조합 21-01 사업
- \* 탈퇴신청년도의 지분가치에 따른 탈퇴환급률

년차	1년	2년	3년	4년	5년	6년	7년	8년	9년	10년
환급률	103.9%	102.7%	103.7%	105.0%	106.2%	107.5%	108.7%	110.0%	111.2%	112.5%
년차	11년	12년	13년	14년	15년	16년	17년	18년	19년	20년
환급률	113.7%	115.0%	116.2%	117.5%	118.7%	121.2%	129.0%	136.7%	144.0%	211.9%



- \* 조합원은 정관 제16조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 가능하고, 이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합니다.
- \* 탈퇴 시, 환급금은 당해년도 지분가치에 따라 매년 상이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 범위는 납입출자금과 사업이익잉여금 등을 포함하며, 법정적립금(기본법 제 50조 제1항에 따름)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.

### [탈퇴안내]

- \* 사업탈퇴는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탈퇴신청해의 말일(12월 31일)에 탈퇴처리됩니다.
- \* 탈퇴환급금은 회계년도 종료 후 협동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뒤 지급됩니다. (신청년도 다음해 4월 중 예상)